

November 8, 2024

## 중국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 관리방법」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상무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은 2024. 11. 1.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sup>1</sup> 관리방법<sup>2</sup>」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법은 2006. 1. 31.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5. 10. 28.자 1 차 개정안(이하 "현행 방법")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 차 개정안(이하 "신 방법")은 2024. 12. 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현행 방법 대비 신 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I. 주요 개정 내용

주제	현행 방법	신 방법	비고
근거법령	- 외상투자 <sup>3</sup> 및 상장회사 감독관리 관련 법률 법규 및 「외국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 잠행규정 <sup>4</sup> 」(제1조)	- 「외상투자법 <sup>5</sup> 」, 「증권법 <sup>6</sup> 」 등 법률 법규(제1조)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승인절차	-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조)	- 상무주관부서는 「외상투자법」, 「외상투자정보보고방법 <sup>7</sup> 」 등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정보보고 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함(제30조)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외국투자자의 범위	- 외국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제6조) -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투자자는 현행 방법을 참조하	- 외국의 <b>개인</b> , 기업 또는 기타 조직(제3조, 제6조) -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투자자 및 <b>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b>	외국 국적의 개인 및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1 외국투자자가 중·장기로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함

2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

3 현행 방법 개정 당시 외상투자 관련 법령은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이었음. 그러나 상기 법령들은 2020. 1. 1.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에 의해 폐지되었음

4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暂行规定

5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6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7 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

	여 전략투자를 진행(제27조)	은 신 방법을 참조하여 전략투자를 진행(제35조)	국적의 개인도 적용될 수 있음
자산 관련 요건	- 외국투자자 또는 그 모회사가 <b>1억 달러</b> 이상 해외 자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b>5억 달러</b> 이상 자산을 관리해야 함(제6조)	- 외국투자자 또는 그 100% 주주가 <b>5,000만 달러</b> 이상 자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b>3억 달러 이상</b> 자산을 관리해야 함;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5억 달러 이상 자산을 관리해야 함(제6조)	외국투자자의 자산 관련 요건이 완화됨
전략투자 방법	- 계약을 통한 양수도,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및 중국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상장회사 A주 <sup>8</sup> 주식 취득(제5조)	- 계약을 통한 양수도,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b>(계약) 청약에 의한 인수(要约收购)<sup>9</sup></b> 및 중국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상장회사 A주 주식 취득(제2조)	외국투자자의 전략투자 방법 다양화
lock-up period 및 주식 최소 보유 비율	- 상장회사 A주 주식은 취득 후 <b>3년</b> 내 양도 불가(제5조) - 첫 투자 후 취득한 주식 비율은 <b>10%</b> 이상(제5조)	- 상장회사 A주 주식은 취득 후 <b>12개월</b> 내에 양도 불가(제10조) - 계약을 통한 양수도, 청약에 의한 인수 방식으로 전략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 비율은 <b>5%</b> 이상(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비율 제한 없음)(제14조, 제15조)	lock-up period를 단축 및 주식 보유 비율 제한 완화
주식 스왑 방식의 거래	N/A <sup>10</sup>	- 외국투자자는 그가 보유한 해외 회사의 지분 또는 외국투자자가 발행한 신주를 지급 수단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를 진행할 수 있음(단, 계약을 통한 양수도 방식의 경우 해당 해외 회사는 상장회사이어야 함)	주식 스왑 거래 방식 도입
외부 자문기관의 선임 및 실사 의무	N/A	- 중국에서 등록하고 「증권법」 규정에 부합하는 외부 자문기관으로서 재무고문기관, 보증추천(保荐)기관 또는 변호사사무소를 고문으로 선임해야 함 - 외국투자자와 상장회사에 의해 선임된 외부 자문기관은 신 방법의 요구사항, 중국 국가안전에 대한	외국투자자와 상장회사의 외부 자문기관 선임 의무 및 외부 자문기관의 실사 및 의견서 제출 의무 추가

8 A주, 즉 A股(A-Share)는 중국에 등록된 회사가 발행하고, 중국에 상장되며, 액면가가 위안화로 표시되며 위안화로 구입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통 주식을 의미함

9 한국의 공개매수와 유사한 개념임

10 「외국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 집행규정」 제27조에 주식 스왑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영향,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후 의견서 제출 필요	
적용의 예외	N/A	- 적격해외기구투자자(QFII) <sup>11</sup> 및 인민폐적격해외기구투자자(RQFII) <sup>12</sup> 가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가 A주에 상장하여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 개인이 2부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스톡옵션을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경우 신 방법이 적용되지 않음(제33조) <sup>13</sup>	신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함
A주 외 다른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적용	N/A	- 외국투자자가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sup>14</sup> 에 공시된 회사에 대해 전략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신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제34조)	외국투자자가 신삼판에 투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II. 시사점

신 방법은 외국투자자의 범위 확대(개인을 추가), 자산요건 완화, lock-up period 단축, 주식 보유 비율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들이 A주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 문턱을 낮추고, 청약에 의한 인수 방식과 주식 스왑 거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자 형태를 다양화 하고 거래 구조의 유연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신 방법은 투자 절차 간소화, 사전 진입규제 완화(사중 및 사후 규제로 전환) 및 외부 자문기관의 실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증권 자본 시장의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향후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 외국인 투자 제한의 축소 및 외자 진입 제한의 추가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외자유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up>11</sup> 合格境外机构投资者(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sup>12</sup> 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sup>13</sup> 단, 2024. 11. 1. 상무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부서의 담당자는 신 방법 시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외부자문기관은 외국투자자 및 그 일치 행위자가 다양한 방법(QFII/RQFII, 상하이-선전-홍콩 연결통로(沪深港通)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율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배권을 취득하는 등 네거티브리스트 위반 행위가 있으면 아니 된다고 밝혔음.

<sup>14</sup> 중국에서 신삼판(新三板)으로 불리며 비상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내 전국적인 지분 거래 플랫폼을 의미함

---

## 관련 구성원

---

### 권대식

변호사

T 86.10.6461.3650

E [daeshik.kwon@bkl.co.kr](mailto:daeshik.kwon@bkl.co.kr)

###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

T 86.10.6461.3653

E [jingnan.jin@bkl.co.kr](mailto:jingnan.jin@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